

[] 등록신청서
처리시설설계·시공업 [] 변경등록신청서
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)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영업소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실험실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등록/변경 내용				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 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) 1부 2.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(변경등록의 경 우에 한정합니다) 각 1부	수수료 등록 : 23,000원 변경등록 : 14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(사본 1부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신청서(신고서)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	

유 의 사 항

1. 신청(신고)을 하여야 하는 대상: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의 등록·등록사항 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
2.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: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
3.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
 - 가. 영업소의 명칭 변경
 - 나. 기술요원의 변경
 - 다. 대표자의 변경
 - 라.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
 - 마.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

처 리 절 차

